

37. 파라과이 (Paraguay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(가입자/사용자)	9% / 14% (통합사회보험료)	9% / 14% (통합사회보험료)	-
연금수급 개시 연령	60세(퇴직필수)	60세	퇴직 조건 삭제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,250주	1,250주	-
노령연금 지급률	가입자 평균소득 100%	가입자 평균소득 100%	-
일시금	사망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, 납부기간 1년당 1개월분의 법정 최저임금을 일시금 지급	사망한 가입자의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, 납부기간 1년당 1개월분의 법정 최저임금을 일시금 지급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**최초법** : 1943년(사회보험), 2009년(비기여 노령연금)
- **현행법** : 1950년(사회보험), 1992년(통합연금제도), 2005년(퇴직연금), 2009년(비기여노령연금), 2011년(부분연금), 2011년(교사), 2011년(최저연금), 2013년(자영자), 2015년(가사근로자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

3 적용대상

- **사회보험**
 - **당연적용** : 분권화된 국가단체 및 부분적으로 국가가 부분 소유한 기업의 근로자, 지방자치단체 근로자, 파트타임 또는 일용 근로자, 가사근로자, 견습생 등을 포함한 근로자
 - **임의적용** : 자영자, 가정주부, 종전에 당연 적용(노령 및 유족급여에만 해당)되었던 자

- **특별제도** : 공공부문의 근로자, 공교육 교사, 경찰, 군인, 철도 근로자, 항만 근로자, 은행 근로자, 소규모 사업가
- **사회부조** : 파라과이 취약계층
 - 특정한 전쟁 참전 용사 및 그 피부양자를 위한 특별 제도

4 재원조달

- **가입자**
 - 사회보험
 - 월 적용소득(가족수당에 따른 급여는 제외)의 9%
 - 종전에 당연적용(노령 및 유족급여에만 해당)되었던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종 36개월 동안의 월 평균소득의 12.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 2,192,839 guaranies
 - 견습생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 - 일용근로자 및 특정 농업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1,518,120 guaranies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없음
 - 당연 가입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 - 사회부조 : 없음
- **자영자**
 - 사회보험
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12.5%에 행정 수수료 0.5%를 가산한 금액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,192,839 guaranies
 - 자영자의 보험료는 산재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 - 사회부조 : 없음
- **사용자**
 - 사회보험
 - 임금 지급 총액(가족수당에 따른 급여는 제외)의 14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 2,192,839 guaranies
 - 견습생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 - 일용근로자 및 특정 농업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1,518,120 guaranies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없음
 - 사용자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이기도 함
 - 사회부조 : 없음
- **사용자**
 - 사회보험

- 월 적용소득의 1.5%
-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 2,192,839 guaranies
 - 건습생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 - 일용근로자 및 특정 농업근로자에 대한 월 최저소득은 1,518,120 guaranies
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최대소득 없음
- 정부의 보험료는 질병 및 출산 현금급여, 의료급여, 산재급여의 재원이기도 하며, 행정 비용도 부담함
- 사회부조 : 총 비용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,250주 이상인 60세 도달자
 - 부분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이상인 65세 도달자
 - 조기연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1,500주 이상인 55세 도달자
 - 노령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다른 연금이나 임금이 없는 65세 도달자
 - 자산조사 : 노인 삶의 질 평가(ICV-AM)에 기초하여 공핍으로 판정되어야 함
 - ICV-AM : 소득, 소비양상, 거주 여건 등에 기초하여 빈곤이나 취약 노인을 규정하는 표적체계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65세 미만으로 비근로 관련 장애로 통상적인 직업에서 소득 능력을 30% 이상 상실한 것으로 판정되고, 다음의 보험료 납부기간이 있는 자
 - 55세 미만인 자는 150주 이상
 - 55~59세인 자는 150주에서 250주
 - 60~64세인 자는 250주에서 400주
 - 3명의 사회보장기관 의사들로 구성된 의료위원회에서 소득능력 상실을 판정
 - 장애는 5년 이상 연금 수급 후에 영구적인 것으로 간주됨
 - 장애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또는 장애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 - 또는 사망 당시, 60세 미만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이상인 경우

- 수급 가능 유족 : 배우자 또는 최소 5년간(자녀가 있다면 2년간) 동거하였던 사실혼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장애아는 연령제한 없음)
 - 이들이 없다면, 사망자의 피부양 부모
-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, 재혼 또는 동거하면 연금 지급 정지
 - 재혼일시금 :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동거하는 경우 지급
- 유족연금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일시금 : 사망자 가입자이었으나 보험료 납부기간이 750주 미만인 경우
 - 유족일시금은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 따라 해외 지급 가능
- 장제비 :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 수급자격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6

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사회보험)
 -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100% 지급
 - 월 평균소득은 퇴직 전 최종 36개월간(마지막 월 제외)의 소득을 기초로 함; 자영자의 경우 최종 12개월
 - 부분연금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60%에 15년을 초과하는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월 평균소득의 4%를 가산하여 지급(최대 100%까지)
 - 조기연금 :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80%에 청구 당시 가입자의 연령 55세 초과 1년당 (59세까지) 4%씩 가산하여 지급
 - 월 최저 노령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33%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,192,839 guaranies
 - 월 최대 노령연금액은 일 최저임금의 300배
 - 법정 일 최저임금 : 84,340 guaranies
 - 지급 시기 : 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12월에는 1개월분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됨
 -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
- 노령사회연금(사회부조, 자산조사)
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25% 이상 지급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사회보험)
 - 장애발생 전 최종 36개월간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0%에 150주 초과 보험료 납부 기간 50주당 평균소득의 1.5%씩 가산하되 총 100%까지를 상한으로 지급
 -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법정 월 최저임금의 33%
 - 법정 월 최저임금은 2,192,839 guaranies
 - 월 최대 장애연금액은 일 최저임금의 300배
 - 법정 일 최저임금 : 84,340 guaranies

- 지급시기 : 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12월에는 1개월분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됨
-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60%가 40세 초과 배우자/사실혼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에게 균분 지급
 - 40세 미만 배우자/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사망자가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요건을 충족한 노령 또는 장애연금 연간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으로 지급
 - 수급 가능 배우자, 사실혼 배우자, 고아가 없는 경우,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부모에게 지급됨
 - 지급시기 : 연금은 매월 지급되며 12월에는 1개월분의 연금이 추가로 지급됨
 - 재혼일시금 : 개인의 연간 유족연금액의 2배를 일시금으로 지급
 - 급여 조정 :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동에 기초하여 매년 조정
- 유족일시금
 - 보험료 납부기간 1년당 1개월분의 법정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됨
 - 법정 월 최저임금 : 2,192,839 guaranies
- 장제비
 - 법정 일 최저임금의 7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됨
 - 법정 일 최저임금 : 84,340 guaranies

7

관리운영기관

○ 사회보험기관(Social Insurance Institute)

- <https://portal.ips.gov.py>
- 사회보험제도 관리 및 보험료 징수

○ 비기여연금본부(Directorate for Noncontributory Pensions; DPNC)

- www.hacienda.gov.py
- 내무부 산하, 노령사회보험 관리

<2019년 ISSA 자료>